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

검토보고서

2024. 6. 13.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	서울특별시 마포구 동	
1	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	구청장
	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"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"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O 제출자: 구청장

O 제안일 : 2024. 5. 24.

O 회부일: 2024. 5. 28. (의안번호: 24-76)

2. 제안이유

특별협의회 운영 시 의장 자격을 동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관련업무 부서장도 의장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O 특별협의회 의장 자격 변경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O 관계법령
 - -「지방자치법」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)
 - 입법예고 : 2024. 2. 29. ~ 3. 20.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보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특별협의회 운영 시 의장 자격을 동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관련업무 부서장도 의장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4조제1항 전단 중 "동장으로"를 "동장 또는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"로, 같은 항 후단 중 "동장"을 "동장 또는 관련 업무 부서장"으로, "동 민원"을 "민원"으로 변경하는 내용임.

O 절차상 검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. 2. 29.부터 2024. 3. 20.까지를 입법예고기간으로 하여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제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. 2. 29.자 구보에는 게재되었으나 홈페이지 게재는 2024. 3. 5.에 게재하였음.

[2024년]2월 29일 구보[2136호]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」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			
[2024년]2월 29일 구보[2136호] 작성일 2024.02.29	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생성위원회 설치 및 운 공고(입법에고) 자치왕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-396호 2024-13-06 - 2024-03-26 (2024-2.26)호와 관련됩니다. 구 자치보고 입법에 관한 조천 147조에 따라 「서울특별」 등록발시 마포구 등 민관생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보기로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	게내제호 담당자/연락처 등록일 니 마포구 등 민관상생위원회	안 입법해고 120240305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」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
- 제2024-331호: 동진시장 시장정비시압 추진계획 승인 추천 신청에 따른 재공함 공고	분임 입법에 고로[서울특별시 대포구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계]. 끝.			

- 입법예고 제도는 자치법규 입법과정상 법정절차로서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충분한 의견제시 기간을 임의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입법예고의 목적이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 할 것임.
- 따라서 자치법규 입안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입법이 무효
 가 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
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

O 내용상 검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민원별 상생위원회 개최 주요 내용을 보면, 아현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등 기관 관련 갈등 조정 협의, 발전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설계 변경 및 계약 해지 관련, LNG 발전소 대기 오염물질 배출 대책 미흡관련,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지하 주차장 건립 관련, 성산근린 공원 재조성 사업 논의 등을 포함하고 있음. 이러한 사안들을 볼 때, 동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민원은 해당 소관 부서장이 의장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민원은 찬반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주민들 간에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민원의 난이도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위원으로 구성하여 민원 해결 과정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.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 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 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
[시행 2022.10.07](일부개정) 2022.09.15 조례 제1486호

제7조(예고방법)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 재하여 공고한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시보・신문

- · 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수 있다.